

飼料管理法改正法律案

81. 3. 24 공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품질향상 및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생산의 안정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료”라 함은 축산법에 의한 가축,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동물·어류등(이하 “동물”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2. “단미사료”라 함은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물질로써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라 함은 2종이상의 단미사료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화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제조업”이라 함은 사료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하며, “수입업”이라 함은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함을 말한다.

6.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판매업자”라 함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외의 자로서 사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사료시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

제 4 조 (사료품질관리위원회)

제 2 장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제 5 조 (사료의 수급조절등) ① 농수산부장관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진흥 또는 사료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사료조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료를 지정하여 이를 수출

수입하게 하거나 비축·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수산부 장관은 사료조사단체가 사료를 수출·수입하거나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③ 농수산부 장관은 사료조절단체가 제 2항의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 14조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사료를 수입 또는 공급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사료의 가격안정조치) 농수산부 장관은 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료에 대하여 판매방법을 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1. 수입사료
2. 배합사료
3. 정부관리양곡 또는 수입양곡의 부산물인 사료
4. 제 1호 내지 제 3호 이외에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사료

제 7 조 (사료의 용도의 판매금지) 누구든지 제 6조 제 1호·제 3호 또는 제 4호의 사료를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용도이외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8 조 (매점·매석의 금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사료를 매점하거나 사료의 제조 또는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 장 품질관리

제 9 조 (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등) ① 배합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단미사료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

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 (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요건과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농수산부 장관은 사료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그 제조시설 중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는 농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등록을 한 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농수산부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 조 (판매업의 신고) ① 사료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 9조 제 6항의 규정은 제 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11 조 (공정규격의 설정등) ① 농수산부 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종류별 성분의 최소량 또는 최대량과 기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규격(이하 “공정규격”이라 한다)을 설정·변경하거나 이를 폐지할 수 있다.

② 농수산부 장관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규격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하며, 그 시행일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료성분등의 등록)

제13조 (사료성분등록사항의 표시등)

제14조 (유해사료의 제조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료(이하 “유해사료”라 한다)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인체 또는 동물에 해로운 유독성 물질이 기준이상으로 함유된 것.
2.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3. 제 1 호 및 제 2 호이외에 동물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료의 검사등)

제16조 (폐기등의 조치)

제17조 (제조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등)

제18조 (영업의 정지명령)

제19조 (허위광고의 금지)

제20조 (판매의 금지)

제 4 장 감 독

제21조 (보고·검사등) ①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

조절단체 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제조업자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사료 및 시설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사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사료조절단체 또는 사료검정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 (고시)

제23조 (수수료 등)

제24조 (증표의 제시)

제25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26조 (이의신청)

제27조 (사료의 감량비율)

제28조 (적용배제)

제29조 (시행령)

제 6 장 벌 칙

제30조 (벌칙)

제31조 (벌칙)

제32조 (벌칙)

제33조 (양벌규정)

제3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